

# 본회기사

## 제 4 회 정 기 총 회

대한건축사협회 제4회 정기총회를 1969년 11월 25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대원의 170명중 115명이 출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 임원개선 정관개정 기타 사항등 여러가지 중요사항을 처리 하였다.

姜明求 회장의 개회사를 이어 1969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을 통과 한 다음 姜奉辰총무이사 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李鍾壽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오후의 속개에서 임기 만료된 임원의 개선에서 姜明求 회장에 대한 유임동의를 재석 107명중 65명의 찬성과 金東珪이사 韓昌鎭이사 具允會감사에 대한 유임동의를 재석 107명중 76명의 찬동으로 각각 가결하였다. 새로 유임된 임원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를 갖게 된다.

이어 지난 69년도 예산승인때 건설부 지시 사항(서울특별시 지부들 본부직할로 하여 예산결약을 기할것)에 대하여 종전대로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부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그대로 독립시킬 것으로한 동의를 재석 107명중 58명으로 동의가 통과되었다.

1970년도 예산안 21,899,200원 및 신년도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 세입예산

회비수입	17,668,400
사업수입	900,000
잡수입	70,000
이월금	2,950,800
	21,899,200

### 세출예산

회의비	1,501,700
급 내	5,223,800

사무비	5,893,800
사업비	2,520,200
출판비	2,851,600
공과금	9,000
적립금	1,892,000
차량비	1,500,000
예비비	426,600
합 계	21,899,200

### 사업계획

건축사법 개정

건축법 개정

건설업법 개정

과세 표준소득을 현실화

보수기준 개정

건축자재 및 노임시세 자료수집 보급

농어촌 주택작품 전시

회원실무 강습회개회

협회회원 명부 발행

정관개정에는 회원의 경제 자립 및 지위향상이 되는 공제조합 설립문제를 정관제5조6항에 명문화시켰다.

이날 개정된 정관은

제28조를 임명한다를 임면한다

제29조 부에는 담당직원을 두되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를 회장이 임면한다.

제48조 각부서의 직원은 간사회의 의결을 받아 지부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54조 지부재정은 지부에서 수입되는 정회원 회비 입회비 사업수입금, 창조회비중 본회의 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충당한다.

기타사항에서

건축사 2급폐지 추진위원회 구성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폐회하였다.